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즌5 제7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99쪽

[4~7] 인문

조선 전기 조정의 화폐 제도

지문 평가

평이한 흐름의 쉬운 글이다. '화권재상'을 정확히 이해하기만 하면 오해할 대목이 없기 때문이다. 화권재상의 핵심은 '조정이 발행한 화폐'만이 유통되는 것이고, 따라서 '포화'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에 해당한다. 이를 중심으로 당시 조선에서는 왜 화권재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읽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키워드

인문 - 조선사 - 화권재상

화권재상, 면포, 실물 화폐, 저화, 대용 화폐, 포화, 오승포, 조선통보, 부상대고, 홍문관의 관료들, 육조 대신들, 추포, 추포 금령

문단 1 조선 조정의 화권재상

- 1) 조선에서는 물품 거래와 부세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 제도가 공익을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화폐 발행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화권재상’**을 표방하였다. 부세란 세금 부과를 뜻한다.

▶ 조선은 '화권재상'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조정이 독점하여 발행한 화폐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끼리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화권재상 = 조선 조정의 '화폐 발행권' 독점

- 2) 하지만 화폐 유통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는 오랜 기간 통용되지 못하였다.

◀ 백락 짚기 글의 초점이 되는 문제 상황이다. 조정에서는 화권재상을 표방했지만,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가 오랫동안 민간에서 통용되지 못했다. 즉 '화권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문제 상황: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가 제대로 통용되지 못함

문단 2 면포와 저화의 유통

- 1) 무명실로 짠 **면포**는 조선 초부터 민간 거래에서 **실물 화폐**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면포는 의복 재료로서 **사용 가치가 높아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의 매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 민간 거래는 조선 초부터 면포에 대한 의존이 컸다. 면포는 실물 화폐로, 사용 가치가 높아 이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가 높은 상태였다.

※ 주목 즉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와는 별개로 이미 '면포'가 널리 화폐로서 가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정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화권재상'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다. 아마 이것이 선호됨에 따라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가 제대로 통용되지 못했고, 화권재상이 실패한 것이겠다(문단 1-2).

- 2) 반면 **조정**에서 발행한 지폐인 **저화**는 사용 가치가 없는 **대용 화폐**여서 민간의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 조선 개국과 더불어 **저화 전용(專用)** 정책을 추진하였던 조정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

어서 결국 면포를 공식 화폐인 **포화(布貨)**로 인정하고 저화와 겸용하도록 하였다.

▶ '조정에서 발행한 지폐'는 바로 '저화'다. 이는 면포와 달리 사용 가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선호되지 않았다.

면포	저화
실물 화폐	대용 화폐
사용 가치 ↑, 민간 신뢰 ↑	사용 가치 ↓, 민간 신뢰 ↓

▶ 따라서 결국 조정에서는 면포를 '포화'로 인정하고(→ 공식 화폐로 삼고), 저화와 겸용하도록 했다.

- 3) 이에 따라 부세 체계에 포화가 편입되어 **35척 길이**의 면포인 **오승포**가 조세 부과의 단위가 되었으며, 오승포 1필에는 저화 20장의 가치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저화의 유통은 더욱 위축되었다.**

▶ '오승포 1필 = 저화 20장'의 가치가 부여되었다. 즉 포화와 저화 모두 공식 화폐로 사용되었는데,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 저화)의 유통은 더 위축되었다.

▶ 잘 생각해 보면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애초에 저화는 사용 가치가 없고, 실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간의 신뢰도가 낮았음을 의식하자. 실제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공식 화폐라도, 저화보다 '포화'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 백락 짚기 즉 '화권재상'의 실패라는 문제 상황의 원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 문제 상황: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가 제대로 통용되지 못함
- 문제 원인: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 저화)가 실물 화폐인 '포화'에 비해 선호되지 않음

문단 3 추포의 유통에 따른 문제

- 1) **조정**에서 발행한 동전인 **조선통보**조차 유통이 어려웠는데, 이는 상인들이 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 이는 다른 종류의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인 조선통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번에는 그 이유가 다르다. 상인들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조선통보는 조정에 의해 발행되는 화폐일 텐데, 그 '실질적인' 권한이 어떻게 상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겠다.

- 2) 15세기부터 면포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복 재료를 찾는 일본의 수요까지 더해져 면포와 은을 교환하는 사무역이 성행하였는데,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부상대고**가 권력층과 결탁하여 오승포를 사들이면서 재산을 축적해 간 것이다.

▶ '면포'는 화폐로도 쓰이지만, 그 자체가 사용 가치를 갖는다(문단 2-1). 당시에는 특히 사무역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그 이득을 누리기 위해 '부상대고'가 오승포를 죄다 사들이는 것이다.

- 3) 직조에 상당한 노동력이 투입되어 질이 높은 **오승포**는 공급 부족으로 부세와 무역에만 쓰였고, 일반 상거래에서는 **35척 미만**의 면포인 **감승포**가 질이 낮다는 이유로 **추포**라 불리며 유통되었다. 다만 추포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길이가 갈수록 짧아졌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였다.

▶ 가뜰이나 '오승포'는 직조 특성상 공급이 부족하였으므로, 결국 이는 부세와 무역에만 쓰였다. '부상대고'의 축적에 의해 그것이 일반 상거래에서는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 그로 인해 민간 거래에서는 질이 낮은 추포[→ 감승포]가 대신 유통되었다. 이 역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갈수록 길이가 짧아졌다. 같은 물건을 사는 데 더 많은 단위의 추포가 필요하게 되니 물가는 자연히 상승했을 것이다.

오승포	추포[→ 감승포]
35척 길이의 면포	35척 미만의 면포
부세와 무역에서 유통	민간 거래에서 유통

4) 이러한 폐단에도 포화를 비축해 둔 상인들이 면포의 화폐성을 유지하려 하였으므로 대용 화폐의 유통은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

※ 주목 물가 상승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부상대고가 오승포를 축적함에 따라, 이들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쥐게 되었다. 오승포를 축적한 이들 입장에서는 오승포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는 만큼, 포화가 아닌 대용 화폐[→ 여기서는 '조선통보']의 유통을 반대하였다. 사실상 오승포[→ 포화]만이 공식 화폐로 기능하기를 바란 것이다.

Ⓢ 맥락 짚기 이 역시 '화권재상'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문단 1-2].

- 문제 상황: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가 제대로 통용되지 못함
- 문제 원인 1: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 저화]가 실물 화폐인 '포화'에 비해 선호되지 않음
- 문제 원인 2: 부상대고가 '포화'의 화폐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의 유통을 반대함

문단 4 조정의 조치

1) 폐단이 심화되자 **홍문관의 관료들**은 포화 유통을 금지하고 저화와 동전을 병용하는 개혁 정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포화 유통을 막을 수 없어서 추포의 유통만을 금지하자며 개혁을 거부하는 **육조 대신들**의 주장이 수용되어 **추포 금령**이 시행되었다.

➡ 이에 따라 '홍문관의 관료들'은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만을 유통시키자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화권재상'의 구체적인 실현을 주장한 것이다[문단 1].

Ⓢ 맥락 짚기 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문제 상황: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가 제대로 통용되지 못함
- 문제 원인 1: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 저화]가 실물 화폐인 '포화'에 비해 선호되지 않음
- 문제 원인 2: 부상대고가 '포화'의 화폐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의 유통을 반대함
- 해결책: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닌, '포화' 유통을 금지하는 것

➡ 그러나 포화의 전면적 유통을 막기는 어렵다고 본 '육조 대신들'의 반대로 추포의 유통만을 금지하는 추포 금령이 시행되었다. 이는 추포가 유통되고, 그 길이는 짧아짐에 따라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였을 것이다[문단 3-3].

※ 주목 다만 이는 '화권재상'의 실현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여전히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닌[→ 국가가 화폐 발행권을 독점할 수 없는 화폐인] '포화'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추포 금령'은 결국 화권재상의 실현을 막은 또 다른 원인으로 기능했겠다.

- 문제 상황: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가 제대로 통용되지 못함
- 문제 원인 1: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 저화]가 실물 화폐인 '포화'에 비해 선호되지 않음
- 문제 원인 2: 부상대고가 '포화'의 화폐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의 유통을 반대함
- 문제 원인 3: '포화 유통 금지'를 육조 대신들이 반대함

2) 금령에 따라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사용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서, 추포를 이어 붙인 **연척포**의 사용이 한때 허용되기도 하였다. 결국 민간에서 오승포의 절반 분량인 **이승포**가 유통되는 등 추포의 화폐적 가치는 점차 상실되었다.

➡ '추포 금령'에도 불구하고 추포는 여전히 민간 거래에서 사용되었는데, 본질적으로 그 공급도 제한적이었던 만큼[문단 3-3], 점차 길이가 짧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승포'까지도 유통되었다. 그에 따라 점차 그 화폐적 가치가 상실되었다. 즉 추포 금령은 '추포의 유통'에 따른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3) 이후 쌀, 은 등이 거래 수단으로 혼용되다가 여러 시도 끝에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동전인 **상평통보**가 통용되어 비로소 화권재상이 달성될 수 있었다.

➡ 결국 조선 조정이 표방하였던 '화권재상'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달성될 수 있었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㉔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대 주는 조건으로 상업 활동을 허락받은 **시전 상인들**은 저화 유통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저화는 찾는 이가 적어 식량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저화 유통으로 지방의 쌀과 면포가 한양으로 유입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이들은 화폐의 변경으로 상업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

➡ 시전 상인들이 저화 유통에 반대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지문을 바탕으로 상인들이 저화 유통에 반대하는 이유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저화의 유통에 반대한 첫 번째 이유로 '저화'가 사용 가치가 없고 민간의 신뢰도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었다[문단 2-2]. '저화'와 달리 실물 화폐인 '포화'는 사용 가치가 높고 민간의 신뢰도가 높으니, 저화가 아닌 포화만이 화폐로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②번 선지는 적절하다.

면포	저화
실물 화폐	대용 화폐
사용 가치 ↑, 민간 신뢰 ↑	사용 가치 ↓, 민간 신뢰 ↓

➡ 두 번째 이유로는 포화를 통해서 거래해 왔는데 화폐를 변경하면 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들었다.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이 '부상대고'가 포화를 비축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겠다[문단 3].

㉕ 상평청은 백성을 구휼할 목적으로 **오승포**를 받고 곡식을 빌려주던 관이었다. 백성들은 관아에 낼 오승포를 주로 **부상대고**한테 빌렸는데, 관아에서 지급받은 곡식의 일부분 취하고 대부분은 오승포를 빌린 대가로 부상대고에게 바쳐야만 하였다.

➡ '부상대고'가 오승포를 축적하여 백성들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줌으로써 큰 이득을 취하는 상황이다[문단 3-2]. 그 결과 '오승포'는 무역과 부세에만 사용되었고, 그보다 질이 떨어지는 '추포'가 대신 민간 거래에 사용되었다.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을 통한 체지방 측정

지문 평가

원리 중심의 평이한 글이다. BIA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적용한 체성분 분석기에서는 어떤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최종적으로 체지방의 무게를 구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면 된다.

키워드

과학 - 생리학 - 체지방성

체지방, 스트레인,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BIA), 제지방, 체수분, 교류 전기, 직류 전기, 체성분 분석기, 전류 단위, 전압 단위,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

문단 1 체지방 측정법

체지방은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 있는 지방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보통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에 따른 무게 측정 소자의 길이 변화량인 **스트레인**을 통해 무게를 측정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체지방의 무게를 측정할 수 없어서 **간접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그중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BIA)**이 널리 활용된다.

▶ 일반적으로 물체의 무게는 스트레인을 통해 '직접' 측정한다. 물체가 무거울수록, 무게 측정 소자에 가해지는 단위 면적당 힘이 커져서 길이 변화량인 '스트레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인 '체지방'은 이처럼 직접 측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BIA가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을 거쳐 체지방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되도록 그 이름인 '전기 저항'과 연관지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단 2 BIA의 원리

1) 인체의 구성 성분은 크게 체지방과 제지방으로 구분된다. **제지방**은 체지방을 제외한 부분으로, 단백질과 무기질, 체내 수분인 **체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맥락 짚기 수식의 형태로 정리될 수 있는 개념들은 되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편이 좋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훨씬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begin{aligned} \text{인체} &= \text{체지방} + \text{제지방} \\ &= \text{체지방} + (\text{단백질} + \text{무기질} + \text{체수분}) \end{aligned}$$

2) BIA는 **체지방**이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아서 전기가 흐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충격이 없도록 인체에 미약한 전기를 가하고, 구성 성분 중 세포 외부와 내부에 퍼져 있는 체수분만을 따라 흐르는 전기를 통해 체수분의 무게를 얻어 간접적으로 체지방의 무게를 계산하는 것이다.

Ⓢ 주목 BIA의 원리가 제시되었다. BIA는 수분을 함유한 부분에만 전기가 흐른다는 점을 이용한다. 전기가 흐르는 성분[→ 체수분]의 무게를 얻고, 이를 포함한 제지방의 무게를 몸무게에서 제하면 체지방의 무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체지방의 무게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방법'에 해당한다[문단1].

3) BIA는 일정 크기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는 **교류 전기**를 사용한다. 주파수가 없는 **직류 전기**나 주파수가 낮은 교류 전기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BIA는 '주파수'를 갖는, 그것도 '일정 크기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교류 전기'만이 사용된다. 이는 인체에 가하는 전기가 '세포막'을 투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주목 이는 달리 말하면, 전기가 세포막을 투과해야만 '모든' 체수분을 따라 흐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세포 외부'에만 체수분이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부'에도 체수분이 분포하기 때문에 전기가 반드시 세포막을 투과해야만 제대로 '체수분의 무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문단2-2].

Ⓢ 참고 이때 '주파수'가 크다는 것을 전압의 세기가 강하다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곤란하다. 애초에 '미약한 전기'를 가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문단2-2]. 즉 전압의 주파수와 전압의 세기는 별개의 개념인 것이다.

문단 3 체성분 분석기를 통한 임피던스 측정

1) BIA를 적용한 **체성분 분석기**는 보통 피검자의 적당한 부위들에 네 개의 전극을 부착하되, 두 개를 전류 단자에, 남은 두 개를 전압 단자에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전류 단위**를 통해 가해진 교류 전기는 피검자의 체수분을 따라 흐르는데,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압 단위**에서 전압을 측정하면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인 **임피던스**를 얻을 수 있다.

▶ 실제로 BIA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전류 단위'를 통해 교류 전기를 흘려 주고 나서, '전압 단위'에서 그 전압을 측정하면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

Ⓢ 맥락 짚기 '임피던스'는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전압, 전류' 간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일정한 크기의 전류가 흐를 때 측정되는 전압이 클수록 '임피던스'는 커진다.

$$\text{임피던스} = \frac{\text{전압}}{\text{전류}}$$

2) 임피던스는 교류 전기의 흐름이 방해 받는 정도로, 체수분에 녹아 있는 전해질에 의한 방해를 나타내는 **저항**과 세포막에 의한 방해를 나타내는 **리액턴스**가 함께 반영된 값이다. 리액턴스는 특히 교류 전기가 지닌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세포막을 잘 투과하여 리액턴스가 작아지는 것이다.

▶ 쉽게 말해서 '임피던스'가 클수록 체수분을 타고 흐른 교류 전기가 받은 방해의 정도가 높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전해질'과 '세포막'이다.

▶ 즉 체수분에 흐르는 교류 전기는 전해질로 인해 그 흐름이 방해 받는 정도인 '저항'과 세포막에 의해 방해를 받는 정도인 '리액턴스'로 나뉜다.

$$\text{임피던스} = \text{저항} + \text{리액턴스}$$

Ⓢ 맥락 짚기 이때 '주파수'가 높으면 그만큼 전류가 세포막을 잘 투과하여 세포 내부의 체수분에도 전기가 잘 흐르므로[문단2-3], '리액턴스'가 낮아진다.

$$\text{교류 전기의 주파수} \uparrow \Rightarrow \text{리액턴스} \downarrow$$

문단 4 임피던스를 통한 체지방 측정

- 1) BIA는 체수분이 원통 형태로 있다고 가정한다. 길이 방향을 따라 단면적이 일정한 원통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교류 전기를 흘릴 때 임피던스 Z 는 단면적 S 가 넓을수록, 피검자의 키에 해당하는 길이 L 이 짧을수록 작다.

➡ 인체에는 체수분이 한곳에 모여 있지도 않을 뿐더러 수분이므로 어떤 형태를 띠지도 않겠지만, 편의를 위해 이를 그냥 하나로 모아서 '원통' 형태로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즉 체수분을 기준으로 원통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교류 전기가 흐를 때 측정되는 '임피던스'는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text{길이} \rightarrow \text{피검자의 키 } L \uparrow, \text{ 단면적 } S \downarrow \Rightarrow \text{임피던스 } Z \uparrow$$

- 2) 체수분 원통의 부피는 단면적과 길이의 곱이므로 결국 $(K_1 L^2 / Z) + K_2$ 와 같다. 여기서 K_1 과 K_2 는 전해질의 농도와 교류 전기의 주파수에 따라 경험적으로 정해지는 상수이다.

✖ 주 목 가장 중요한 정보가 주어지는 대목이다. '체수분의 부피'는 결국 '체수분의 무게'를 구하기 위한 값일 테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지방의 무게'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문단2-2]. 왜 이런 수식이 성립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론만 챙겨도 무방하다.

$$\text{체수분의 부피} = (K_1 L^2 / Z) + K_2$$

➕ 참고 자세히 따져 보면 이런 논리인 것이다. Z 가 L 에 비례하고 S 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①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α 는 일종의 비례 상수이다. 여기서 S 를 좌변으로 옮기면 ②를 얻을 수 있다. 체수분의 부피는 L 과 S 를 곱한 값이므로, S 대신에 ②를 활용하면 최종적으로 ③을 얻을 수 있다. α 가 K_1 과 K_2 에 대응하는 값이므로, 이는 앞서 얻은 '체수분의 부피'와 같다.

$$\textcircled{1} Z = \alpha \times \frac{L}{S}$$

$$\textcircled{2} S = \alpha \times \frac{L}{Z}$$

$$\textcircled{3} \text{체수분의 부피} = L \times S = \alpha \times \frac{L^2}{Z}$$

- 3) 그런데 체수분의 밀도는 1이므로 체수분의 부피는 체수분의 무게와 같다.

➡ '밀도, 부피, 무게'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결론만 챙겨도 무방하다.

$$\text{체수분의 무게} = (K_1 L^2 / Z) + K_2$$

- 4) 피검자의 키[→ L]와 임피던스[→ Z]를 측정하면 이를 통해 체수분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체지방의 조성 비율이 사람들 사이에서 대체로 일정하다는 점을 토대로 체수분의 무게로부터 체지방의 무게를 구하여, 몸무게에서 이를 빼면 체지방의 무게를 구할 수 있다.

➡ K_1 과 K_2 는 구할 필요가 없는 상수이므로, L , Z 만 있으면 '체수분의 무게'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체지방의 무게'를 구할 수 있다[→ 가령 체지방의 10%가 체수분이라면, 체수분의 무게를 10배 곱하면 체지방의 무게가 된다.]. 마지막으로 '몸무게'에서 '체지방의 무게'를 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체지방의 무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 주 목 BIA를 적용한 '체성분 분석기'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체에 미약한 세기의 교류 전기를 가함 $\Rightarrow$ 전류가 체수분을 따라 흐름 $\Rightarrow Z$ 얻음 $\Rightarrow$ 체수분의 무게 구함 $\Rightarrow$ 체지방의 무게 구함 $\Rightarrow$ 체지방의 무게[→ 몸무게 - 체지방의 무게] 구함

<보기> 분석

<보기1> 문단

'체성분 분석기'로 실험 대상 ㉠, ㉡의 체지방 무게를 1차, 2차 측정한다. 키는 ㉠이 더 크고, 몸무게는 ㉡이 더 무겁다. 단, 체수분에서의 전해질 농도가 같다고 가정한다.

⚠ 맥락 짚기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한 무게 측정 과정을 그대로 떠올리면 된다.

인체에 미약한 세기의 교류 전기를 가함 $\Rightarrow$ 전류가 체수분을 따라 흐름 $\Rightarrow Z$ 얻음 $\Rightarrow$ 체수분의 무게 구함 $\Rightarrow$ 체지방의 무게 구함 $\Rightarrow$ 체지방의 무게[→ 몸무게 - 체지방의 무게] 구함

➡ 이때 ㉠, ㉡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은 '키'가 더 큰데, 이는 '체수분의 무게'와 관련이 있다. 체수분의 무게는 '키'의 제곱값에 비례하기 때문이다[문단4-2]. 즉 '체수분의 무게'는 ㉠이 ㉡보다 크다. 그렇다면 '체지방의 무게'도 ㉠이 더 무거울 것이다.

➡ 그런데 몸무게는 ㉡가 더 무거우니, '체지방의 무게'는 ㉡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체지방의 무게'는 '몸무게 - 체지방의 무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키 : ㉠ > ㉡
- 체수분의 무게 : ㉠ > ㉡
- 체지방의 무게 : ㉠ > ㉡
- 몸무게 : ㉠ < ㉡
- 체지방의 무게 : ㉠ < ㉡

➕ 참고 헷갈릴 때는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하자. 그러면 판단하기가 훨씬 직관적이다.

	몸무게	체지방	체지방
㉠	70	30	40
㉡	80	20	60

➡ 또한 조건에 따르면 '전해질 농도'가 같단다. 이는 전해질에 의해 교류 전기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인 '저항'과 관련이 있다[문단3-2]. 즉 임피던스에서 '저항'은 일정한 값으로 설정되었다는 뜻이다.

<보기2> 문단

- 1) 1차 측정 후 교류 전기의 주파수를 낮추어 2차 측정하면, ㉠, ㉡의 임피던스는 1차 측정과 비교할 때 (㉠) .

➡ 1차 측정을 통해 이미 ㉠, ㉡의 체지방의 무게를 파악한 상태이다. 1)의 결과를 1차 측정의 결과로 여기면 된다.

∴ '주파수'는 '리액턴스'와 관련이 있다[문단3-2]. 주파수를 낮추어 측정하면 '리액턴스'의 값이 높아짐에 따라, '임피던스'는 1차 측정과 비교할 때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 ㉡ 모두에게 공히 해결되는 부분이므로, 2차 측정에서 '임피던스'는 모두 커진다.

교류 전기의 주파수 ↓ ⇒ 리액턴스 ↑ ⇒ 임피던스 ↑

2) 그 임피던스의 값이 ㉠에서보다 ㉢에서 더 크게 측정되었다면, 체수분의 무게는 ㉠가 (㉣).

∴ ‘체수분의 무게’는 $(K_1 L^2 / Z) + K_2$ 이므로 임피던스 Z가 클수록 체수분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즉 체수분의 무게는 ㉠가 더 무겁다. 이는 사실 1차 측정 결과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 ‘주파수’가 달라진 것이지, ㉠나 ㉢의 몸무게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체지방의 무게는 1차 측정 시와 큰 차이 없이, ㉠가 (㉣).

∴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면 된다. ‘1차 측정 시와 큰 차이 없이’라는 표현도 참고하자. 따라서 체지방의 무게 1차 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가 더 가볍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번 선지는 적절하다.



[12~17] 사회 통합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공정 거래 위원회의 심사 지침

자문 평가

기본적으로 정보량이 많고, 글의 전개가 마냥 친절하지는 않다. 필요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데에 주력하자.

키워드

(가) 사회 - 경제학 - RPM, 최저 RPM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가격,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RPM), 도매가격, 최저 RPM, 무임승차, 배제성, 외부 효과

(나) 사회 - 법학 - 공정거래법, RPM 심사 지침

공정거래법, 공정 거래 위원회, RPM 심사 지침, 당연 위법의 법칙, 경쟁 촉진 가능성, 경쟁 제한 가능성, 합리의 원칙, 대법원

(가) 문단 1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구조에서, 제조업체가 **소매가격**을 정해 유통업체가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RPM)’**라 한다. 제조업체의 공급 가격인 **도매가격**은 대개 고정되어 있어서, 보통 수요가 일정할 때 RPM은 유통업체의 이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백락 짚기 상당히 밀도 있는 설명이니 차근차근 이해하자. 글의 초점과 직결되는 내용이 주어져 있으므로, 정보량이 많더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 ‘제조업체’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도매가격’에 유통업체에게 판매하고, ‘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을 다시 ‘소매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즉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높을 테고, 따라서 ‘소매가격 - 도매가격’이 곧 유통업체의 이윤에 해당한다.

$$\text{유통업체의 이윤} = \text{소매가격} - \text{도매가격}$$

▶ 따라서 소매가격을 높이면 유통업체의 이윤도 늘어난다. ‘도매가격’은 대개 고정되어 있어서, 늘어난 소매가격만큼의 이윤은 전부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의 것이 된다. 이런 영향을 미치는 소매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RPM이다.

$$\text{유통업체의 이윤} \uparrow = \text{소매가격} \uparrow - \text{도매가격}$$

▶ 참고 물론 이는 ‘수요가 일정할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줄어든다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이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유통업체의 이윤은 줄어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 문단 2 최저 RPM에 대한 기존의 분석

1) RPM 중 특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최저 RPM’**이라 부른다. 경제학적으로 보아 최저 RPM은 자유 경쟁을 저해하기 쉬워서 소비자 후생을 낮추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 글의 초점을 RPM 중에서도 '최저 RPM'→ '소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좁히고 있다. 최저 RPM은 '소비자 후생을 낮추는 것', 즉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예컨대 제조업체 간 담합을 통해 최저 RPM을 함께 시행하면 홀로 가격을 낮추기 어려우므로, 최저 RPM은 제조업체 간의 담합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유통업체들도 가격 경쟁을 피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자신들만의 담합을 위해 제조업체에 최저 RPM의 시행을 요구하기도 한다.

☞ 맥락 짚기 '담합'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최저 RPM'이 어떻게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주어지는 예시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에도 중요하다. 관련된 내용을 선지에서 그대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제시되는 가격이 '소매가격'인데, 그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 RPM을 통해 '제조업체, 유통업체' 모두 '담합'을 공고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유 경쟁이 저해되어 소비자 후생을 낮춘다[문단2~1].

3) 또한 제조업체가 최저 RPM을 통해 소매가격을 높여 주는 대신 유통업체가 신규 제조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등 경쟁업체의 배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담합'의 경우가 아니라도, 제조업체가 최저 RPM을 통해 유통업체의 이윤을 보장할 수도 있다. 그 대신 다른 제조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시 경쟁업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자유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낮춘다.

(가) 문단 3 최저 RPM에 대한 새로운 경제학적 분석

1) 그런데 근래에는 최저 RPM이 오히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경제학적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최저 RPM이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한다고 본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전환되는 대목이다. 이전까지는 최저 RPM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시작되고 있다.

➡ 먼저 최저 RPM은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2) '무임승차'란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의 지불 없이 이용하는 것이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성질이다. 보통 유통업체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추천 등 판매 전 서비스는 물론, 품질 보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런데 최저 RPM이 없으면 서비스만 제공받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무임승차가 일어나기 쉽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떠한 유통업체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즉 최저 RPM은 무임승차를 방지하면서 가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유통업체는 제품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배제성'이 없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물론 제품은 '배제성'이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 소매가격만큼의 대가의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종 서비스'는 배제성이 없으므로, 소비자가 한 유통업체에서 서비스만 사용하고, 해당 유통업체보다 소매가격이 더 낮은 다른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업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 이 자체는 물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업체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유통업체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된다.

☞ 주목 이때 '최저 RPM'을 활용하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유통업체'가 사라지므로, '무임승차'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이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최저 RPM ⇨ 더 낮은 소매가격에 판매 불가능 ⇨ 무임승차 방지 ⇨ 유통업체들의 서비스 제공

(가) 문단 4 최저 RPM이 외부 효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한다는 분석

1) 외부 효과로 인한 문제가 최저 RPM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외부 효과'란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받거나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래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 설정에 의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외부 효과는 이를 왜곡한다.

➡ 최저 RPM이 '외부 효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외부 효과'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다.

2) 가령 유통업체가 자원을 투입하여 벌인 판촉 활동이 수요를 늘리면 제조업체의 이윤도 커지는데, 이로 인해 투입된 단위 자원당 유통업체의 수입은 시장의 원리를 따를 때보다 적어져서 판촉 활동 수준을 적정 수준보다 낮게 정하게 된다. 이는 제조업체에도 손해여서, 제조업체가 최저 RPM을 통해 유통업체의 이윤을 높이면 판촉 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

☞ 맥락 짚기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이를 앞선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과 연결하여, 각각이 무엇에 대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떤 행위 : 유통업체의 판촉 활동
-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을 줌 : 제조업체의 이윤 증가
- 대가를 받지 않음 : 유통업체의 수입이 시장의 원리를 따를 때보다 적어짐

➡ '유통업체의 판촉 활동'이 '제조업체의 이윤'을 늘리더라도[→ 소매가격은 일정해도, 수요 증가로 제조업체의 이윤이 증가하더라도], 유통업체는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유통업체의 입장에서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이때 '최저 RPM'을 통해 유통업체의 이윤을 보장해 준다면, 판촉 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최저 RPM ⇨ 유통업체의 이윤 보장 ⇨ 외부 효과 ↓

(나) 문단 1 공정거래법에 따른 RPM 심사 지침

1)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PM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정 거래 위원회의 예규 중에서 근래에 개정된 RPM 심사 지침도 최저 RPM이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가)의 내용을 (나)의 독해에 의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에서 '최저 RPM'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제시했다면, (나)에서는 'RPM'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 (가)에서는 최저 RPM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도 있지만,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는 요소도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면, (나)에서는 최저 RPM이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라는 'RPM 심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 다만 최저 RPM에 해당하면 **「당연 위법의 원칙」**에 따라 경쟁 제한 성 내지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허용하지 않은 채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과거의 지침과 달리,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쟁 촉진 가능성**과 **경쟁 제한 가능성**을 대등하게 보고 둘의 양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합리의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때의 정당한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전까지는 위법한 것으로 취급된다.

❖ 맥락 짚기 법학 지문을 읽을 때에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 RPM의 시행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이다. 다만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 원칙: 최저 RPM의 시행은 위법
- 예외: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사업자에 의해 입증되면 위법 X

➡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의 원칙' 때문이다. 즉 '경쟁 제한 가능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촉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최저 RPM'이 경쟁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는 (가)의 분석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가)의 문단3].

❖ 주목 '둘의 양을 비교'라는 표현에 유의하자. 즉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 촉진 가능성 > 경쟁 제한 가능성 ⇨ 최저 RPM은 위법 X

(나) 문단 2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RPM 심사 지침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표 간 경쟁이 더 활성화되는지,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선택될 상품이 다양화되는지, 신규 사업자가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그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수 있다.

➡ '경쟁 촉진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의 예시들이 열거되어 있으니 챙겨 두자.

2) 그런데 현재까지 법원이나 공정 거래 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서 업계의 순위 변동이 없을 때의 최저 RPM은 위법하다는 형식적 기준만을 정해 두었는데, 실제 최저 RPM의 대부분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경쟁이 얼마만큼 촉진되었는지 그 양을 입증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 크다.

➡ 다만 실제로 그러한 '예외'가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사업자가 '경쟁 촉진 가능성'과 그 양을 정확히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 문단 3 최저 RPM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주장들

그래서 최저 RPM의 위법성을 '합리의 원칙'하에 판단하기 위해 최저 RPM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업체 간 담합을 통해 특정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인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해 이미 위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를 참조하자는 것이다. 행위의 성격과 시장 구조, 제품의 특성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등을 심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행위의 성격과 관련하여, 유통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최저 RPM은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심사 기준 사례일 수 있다.

➡ 사업자가 경쟁이 얼마만큼 촉진되었는지 그 양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즉 '경쟁 촉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취지일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과 관련 분석 요소들을 토대로 ㉠[→ 최저 RPM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의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가능한 초안을 중 하나를 제안해 보자.

❖ 맥락 짚기 지문에서 설명한 '최저 RPM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을 해당 상황에 적절히 끌고 올 수 있어야 한다.

2) ○ 시장 구조 분석 요소

해당 시장이 경쟁적 시장인지, 시장 지배적 업체가 존재하는 시장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저 RPM을 실시하는 업체의 제품 외에 동질의 다른 제품들을 유통업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지,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 '시장 지배적 업체'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최저 RPM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나)의 문단2-2]. 즉 이는 '경쟁 제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 반면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최저 RPM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가)의 문단4]. 따라서 이는 최저 RPM이 위법이 아닐 수 있게 해 주는, '경쟁 촉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3) ○ 제품 특성 분석 요소

무임승차가 일어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제품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판매 전 서비스나 품질 보증 서비스가 판촉 활동에 있어 필요한 제품인지에 대한 분석이 여기에 해당한다.

➡ '무임승차가 일어나기 쉬운 제품인 경우, 최저 RPM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가)의 문단3]. 따라서 이는 최저 RPM이 위법이 아닐 수 있게 해 주는, '경쟁 촉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판매 전 서비스나 품질 보증 서비스'는 그와 관련이 있는 예시들이었다.

❖ 주목 이렇게 '경쟁 제한 가능성'과 '경쟁 촉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의 원칙'에 따라 최저 RPM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 ㉠의 취지였다. 핵심은 '경쟁 제한 가능성'과 '경쟁 촉진 가능성' → '소비자 후생 증대'의 양 측면을 대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합리의 원칙'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나)의 문단1-2)].

경쟁 촉진 가능성 > 경쟁 제한 가능성 ⇨ 최저 RPM 위법 X

4) ○ ㉔의 세부 내용 초안

[A]

∴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제품’은 ‘판매 전 서비스’가 중요할 것이다. 최저 RPM을 시행하지 않으면, ‘무임승차’ 문제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가)의 문단3~2]. 따라서 최저 RPM은 이때 ‘경쟁 촉진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더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면, 최저 RPM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㉔번 선지는 적절하다.

➡ 참고 ①번 선지의 경우 ‘유통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시행한 최저 RPM’은 담합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가)의 문단2~2], 해당 선지도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러한 최저 RPM은 ‘경쟁 제한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㉔는 ‘합리의 원칙’을 토대로 하고, 따라서 ‘경쟁 촉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해당 선지는 이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적절한 선지가 될 수 없다.



[18~21] 고전시가

(나) 「반조화전가」

— 안동 권씨 —

➡ 수록 지문 평가

‘반조화전가’는 ‘조화전가의 비난을 되돌려 주는 노래’라는 뜻으로, 「조화전가」[→ 화전놀이를 조롱하는 노래]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규방 가사이다. 일반적으로 화전가류 작품들이 여성들만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여 화전놀이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면, 「반조화전가」는 「조화전가」를 지어서 항유했던 남성들에게 반박하기 위해 창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성들의 독자적 문화로서의 화전놀이를 옹호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와 애달플샤 여자 됴이 애달플샤

우리 일신 남자런들 이 아니 쾌할런가

→ 우리 한 몸이[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늦은 봄 궁핍한 날 빈 독을 굶지 말고

춘당대 알성시(= 임금이 참석한 자리에서 치르던 과거 시험)에 일필(一筆)

명작(名作) 하여 내어

→ 임금이 참석한 과거 시험에서 단숨에 훌륭한 글 지어 내어

계화 청삼(= 장원 급제자에게 하사하던, 계수나무 꽃을 수놓은 옷) 빛난 중에
열친 광여(悅親光余,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신을 빛냄) 하련마는

➡ 여자로 태어난 것을 애달파하며 남자로 태어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상상을 하는 부분이다.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제약에 짐작할 수 있다.

하늘이 무지하여 여자 몸으로 마련하니

아무리 애달픈들 고쳐 다시 될 것인가

➡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애달파도 이미 여자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며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규방(= 여자가 거처하는, 깊이 들어앉은 집이나 방) 깊이 들어앉아 옥매(玉梅)

로 벗을 삼아

여자 행실 맑게 닦고 길쌈에 힘쓰더니

➡ ‘규방 깊이 들어앉아’는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던 당시 여성의 삶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봉건적 제약 속에서 여자가 해야 할 일에 힘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동군(東君, 봄을 달리 이르는 말)이 유정하여 삼사월을 몰아오니

→ 봄의 신이 유정하여 삼사월을 몰아오니

원근 벼랑에는 붉은 비단 둘러 있고[→ 비유적 표현]

→ 멀고 가까운 벼랑에는 붉은 꽃이 비단 장막을 두른 듯 피어 있고

마을 주변 도리화는 가지마다 색을 띠어

사창(紗窓, 얇은 김을 바른 창) 안 부녀 흥을 제 혼자 돋우는데

도로혀 생각하니 인생이 이만이라

→ 돌이켜 생각하니 인생이 이렇다.

➡ 규방에 갇혀 생활하던 여인들이 봄이 오자 흥겨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특히 벼랑에 핀 붉은 꽃을 ‘붉은 비단’에 비유하여, 감각적으로 꽃이 핀 봄의 정경을 묘사하고 봄을 맞이하는 설렘을 드러내고 있다.

여자의 화전놀이 예부터 있으므로

한 걸음 두루혀서 봄 풍경 완상하려

→ 한 걸음 돌려서 풍경을 감상하려 하고

➡ 화전놀이의 전통을 떠올리고 집 밖으로 나가 봄 풍경을 즐기려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지심하는(=김매는) 벼들과 한마디로 날 정하여

→ 친구들과 의논하여 화전놀이 할 날을 정하니

맞바위 사미당[→ 화전놀이를 할 정자]에 큰 모임을 열어 내어

금비녀 옥비녀로 용모에 광채 내고

푸른 옷 붉은 치마 도로에 선명하다

▶ 갖가지 장신구와 색색의 옷으로 아름답게 꾸민 부녀자들이 화전놀이에 참가하기 위해 길에 나선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춘풍이 다시 불어 새봄을 더하는 듯

일시에 모인 부녀 삼십여 인 열좌(列坐)하네

→ 일시에 모인 부녀자 삼십 여인이 나란히 앉네.

규방 한담으로 차차 말을 주고받고

기름 가루 모아 내어 소담히 장만하여

→ 기름과 가루를 모아 내어[화전]을 소담히 장만하여

옥녀(玉女) 선동(仙童)들[→ 부녀자들이 화전놀이에 데려온 아이들로 추정함]

을 먼저 먹여 내어놓고

조용히 모여 앉아 정결히 요기한 후

그제야 일어서서 곳곳마다 완상(= 즐겨 구경함)하네

동풍 어제 비에 봄 경치가 새롭구나

▶ 일시에 30여 명이 모일 정도로 부녀자들이 화전놀이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자 준비해 온 것들로 화전을 만들어 요기한 후 봄 풍경을 감상하기 시작한다.

대 위의 벽도화는 날 위하여 웃어 있고

강나루의 버들가지 의연한 춤이로다[→ 의인화]

오색구름 깊은 골에 척척이 만발하니

무릉도원인들 이에서 더하오며[→ 화자의 만족감]

→ 무릉도원인들 이보다 더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며

앞개울 맑은 소(沼) 한가도 한가할사

아름다운 별세계를 다시 보아 무엇 하리

▶ 의인화와 대구를 통해 봄의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규방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와 직접 보는 눈앞의 풍경에 감탄하며 '아름다운 별세계'를 새로이 찾아 구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만족감이 드러난다.

[27~30] 현대시

(나) 「낙타」

— 이한직 —

— 작품 평가

눈앞의 풍경에서 전혀 다른 시·공간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한다. 화자가 '낙타'를 보며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살펴보자.

제 1연 과거 회상

눈을 감으면

제 2연 어린 시절의 선생님을 떠올림

어린 시절,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회초리를 들고서[→ 도치]

▶ '어린 시절, 선생님'을 떠올리고 있다.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회초리를 들고서' '걸어오신다'고 표현함으로써 생생함을 부각하고 있다.

제 3연 낙타와 닮은 선생님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선생님과 낙타의 공통점]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 옛날에 옛날에 —

▶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있는 모습은 어린 시절 선생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 선생님을 닮은 눈앞 낙타의 모습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보건, 옛날이야기를 자주 하였던 늙은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4연 낙타를 바라보는 '나'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나'와 낙타의 공통점]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 '낙타'와 '선생님'은 늙은 외양으로 겹쳐진다. 또한 지금 '나'와 '낙타'는 늙은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봄볕을 등에 지고' 있다는 점에서 겹쳐진다. 즉 '나' 역시 옛날을 추억하던 늙은 선생님처럼, 낙타를 보며 어린 시절의 선생님을 떠올리는 [→ 과거를 추억하는] 나이 든 존재가 된 것이다.

제 5연 동심을 잃고 살아가는 '나'

내가 여원[→ 멀리 떠나보낸] 동심의 옛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

▶ 화자는 봄날의 오후에 동물원에서 낙타를 보고 선생님을 떠올리며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 즉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있다.